



질병관리청

질 병 관 리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
 - 「의료법」 제37조(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) 제3항 및 제4항, 제92조(과태료)
 -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(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18호)
3. **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(선임 및 보수교육) 일정을 [붙임]과 같이 알려드리니, 귀 협회 회원 등 의료기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일정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**
 - *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

- 붙임 1. 의과) 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 1부.
 2. 치과) 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 1부.
 3. 치과) 24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 1부. 끝.

질 병 관 리 청 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영상의학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영상치의학회,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, (사)대한방사선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, 대한개원의협의회,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

기술연구원 김현지 보건연구사 연가 의료방사선과 전결 2023. 12. 18. 장 민유정

협조자

시행 의료방사선과-4173 (2023. 12. 18.) 접수

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의료방사선과 / <http://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516 팩스번호 043-719-7519 / pinkjoa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